

육제품

일본으로의 반입 금지

肉製品の日本への持ち込み禁止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최고 5,000만엔)이
부과됩니다.

家畜伝染病予防法改正により
2020年7月1日から

違法に畜産物を持ち込んだ場合は、
3年以下の拘禁刑又は
最高 300 万円の罰金
(法人の場合は最高 5,000 万円)
が科せられます。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 드리세요
家族や友達にも教えてあげてね



일본국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日本国 農林水産省 動物検疫所